

2024년도 제1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2. 29.(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원(분과위원장), 심동섭, 최진원, 하병현,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1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318건(안전번호 제2024-3800호~6117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4-3800호(순번 1번)는 언론매체에서 타인의 사진을 이용한 사안으로, 저작물성 및 합법 시장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안전번호 제2024-3801호~3803호(순번 2번~4번)는 원저작물의 국내 수입 가능성이 적은 점, 현재 및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시정권고제도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부결함.
 - 안전번호 제2024-3804호~3835호(순번 5번~36번)는 웹하드에서 만화, 방송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4-3836호~3878호(순번 37번~79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4-3879호~6117호(순번 80번~2318번)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252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 2024-1506호~1757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252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원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15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1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원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박현주 전문위원: 제2024-11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현주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제2호 안건 비공개 처리에 동의함.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건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고, 제2호 안건 구글 검색결

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0쪽~12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원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박현주 전문위원: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29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4,736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이번 심의의 경우 긴급 심의 안건이 있어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안건 외에 추가된 목록이 있음.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권리자가 신고한 건으로, 민원인이 직접 촬영하여 언론매체 ‘♣♣♣♣♣♣’에 게시한 행사 사진을 심의대상 게시물 게시자가 언론매체 ‘♣♣♣♣♣’에서 기사에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물인 사진에 표시된 워터마크 잘라낸 후 심의대상 게시물을 게시한 언론매체의 워터마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됨.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모니터링 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타 언론매체인 민원인이 게시한 기사 사진을 복제한 후 해당 사진의 하단에 표시된 워터마크 부분을 삭제하고, 언론매체 ‘♣♣♣♣♣’의 워터마크를 표시하여 게시하였으며, 워터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사진의 경우 특별한 변형 없이 이를 복제한 후 언론매체 ‘♣♣♣♣♣’의 워터마크를 표시하여 게시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용 중인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합법 시장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불법복제물에 의한 급격한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우리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언론사의 기사가 삭제되어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호원의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시정권고 대상으로 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동의하나, 본 사안에 대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허용한다고 비취질 수 있는지 여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음.
- B 위원: 사진의 출처를 바꾼 것에 대해 판례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본 전례가 있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시정권고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행정조치를 하기에는 언론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비교 형량 측면에서도 잘못된 행정조치가 될 우려가 있음.
- C 위원: 기사 내용 자체가 복제된 것은 것인지, 아니면 사진만 복제된 것인가.
- 박현주 전문위원: 기사 내용 자체는 복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C 위원: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개인이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더라도 사실 전달로만 보도록 하는 전례가 있어, 이번 안건의 사진이 저작물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있음.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법적 절차로 간다면 원저작물의 출처를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점에서 게시자가 책임질 만한 사안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시정권고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4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의 자막파일을 영상 없이 게시한 사안이며, 총 7건임.
 (순번 2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원저작물은 국내에서도 방영된 드라마 ‘♡♡♡♡♡ ♡♡’를 토대로 제작된 이른바 ‘쇼트 애니메이션’ 영상저작물임
 (순번 3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원저작물은 본편인 드라마 ‘◆◆◆◆◆ ◆◆◆’의 외전으로 본편 드라마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별도의 방송저작물임.
 순번 2번~3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의 원저작물은 현재 일본의 모바일 앱 ‘■ ■ ■ ■ ■ ■ ■ ■ ■ ■ ■’에서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역제한으로 인하여 이용

할 수 없음.

(순번 4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원저작물은 일본의 잡지 ‘○○○○○ ○○○○○○ ○○○○’의 응모자를 대상으로 유료 배포된 DVD 영상저작물로, 현재는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으나 일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7,000엔에 거래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2번~4번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제한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 수입 가능성이 적은 점, 현재 및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마니아층의 취미 공유로서의 자막 전송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볼 때 불법복제물에 의한 급격한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국내 시정권고 제도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2번~4번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람.

- A 위원: 순번 2번~4번과 관련해서, ‘○○○○○’가 현재 국내에서 방

영하는 곳이 있는가.

- 박현주 전문위원: '○○○○○'의 본편 시리즈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나 ●● 등에서 시청할 수 있음.
- A 위원: 심의대상 블로그에서 자막파일을 제공하여 광고 수익을 얻는 점, 자막만을 제공하여 누적 방문객 수가 백만이 넘는 점 등으로 보아, 불법적으로라도 원저작물을 국내에서 시청하고 있다고 생각됨.
- 박현주 전문위원: '○○○○○'의 본편 시리즈나 영화의 경우 국내에 꾸준히 수입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본편이 아닌 외국 소재 팬들을 위한 유료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스트리밍 되는 팬서비스 차원의 저작물에 관한 것이고, 이와 같은 저작물은 국내 수입가능성이 낮고 국내와의 라이선스 관계가 없는 이상 외국의 저작물이라 할 것이어서 국내 행정조치인 시정권고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됨.
- D 위원: 해당 안전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 또는 보수적으로 봐야하는지는 입법 경의나 각자의 철학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내용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라고 볼 만한 사안으로 생각됨.
- 김원 분과위원장: 순번 2번~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거수로 의결함)

- 김원 분과위원장: 순번 2~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부결함. (가결 1인: D 위원)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5번~36번은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 및 카페, 웹하드에 게시된 방송, 만화의 불법복제물로 총 56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음.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번~3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

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37번~7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중고거래 사이트 '○○○○'와 ♥♥♥ 카페 '♠♠♠♠'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으로 총 53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7번~7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

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0번~231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게시물 수는 4,619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방송, 영화,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애니메이션 '위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54번은 웹하드에서 애니메이션 '위시' 95분 전체 분량을 210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1. 3. 개봉하여 관객 140만명을 동원하였고, 현재 쿠팡플레이 등 OTT에서 서비스 중인 드라마임.

(드라마 '킬러들의 쇼핑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615번은 웹하드에서 드라마 '킬러들의 쇼핑몰' 1화~8화 분량을 2,17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1. 17.부터 디즈니플러스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임.

(만화 '학대받던 추방왕녀는 전생한 전설의 마녀였습니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277번은 웹하드에서 1권 분량을 3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2. 6. e-Book으로 출간된 만화임.

(영화 'ㄱㄱㄱ ㄱ'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303번~2318번은 보호원이 긴급대응저작물로 지정하여 신속심의를 요청한 저작물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음. 현재 일부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작품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는 사안으로 시정 권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80번~231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4-3800호(순번 1번)는 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4-3801호~3803호(순번 2번~4번)는 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4-3804호~3835호(순번 5번~36번)는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4-3836호~3878호(순번 37번~79번)는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4-3879호~6117호(순번 80번~2318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5쪽부터 1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1506호~1757호(순번 1번~252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원 분과위원장이 제1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1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3. 7.

분과위원장 김 원

위원 심동섭

위원 최진원

위원 하병현

위원 한승원